

제2607-1호  
2018. 10. 3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공 고

- 제2018-7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2018-73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38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②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자로 명시
  -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 전화 : 3396-5351~2, FAX : 3396-8730, E-mail : sghost0128@jungg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b>제10조(준용)</b>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p> <p><b>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b>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11조(준용)</b> (현행 제10조와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39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②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설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자로 명시
  -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주거담당, 전화 : 3396-5392 FAX : 3396-8736, E-mail : kmsin@jungg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1조(시행규칙) (생 략)</p>	<p><u>제2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u> 특별회계의 존속기  <u>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u>  <u>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u>  <u>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22조(시행규칙)</u>(현행 제21조와 같음)</p>